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자 료	한·아세안 특별정상회의 2019. 11. 25-26 부산

2019년 11월 28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1. 27.(수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9. 11. 27. (수)	담당부서	불공정무역조사과
담당과장	조택연 과장(044-203-5880)	담 당 자	나한균 사무관(044-203-5882)

무역위원회, 「후르츠 래빗 저작권 침해」 불공정무역행위 판정

- '19. 11. 27일, 제394차 무역위원회 개최 -

□ **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**(위원장 장승화)는 11월 27일(수) **제394차 회의**를 개최하여, 국내 사업자가 신청한 「**후르츠 래빗 저작권 침해**」 조사 건에 대해 **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**하였음

○ 「후르츠 래빗」은 신청인(조윤희와 김재신)이 수박, 레몬, 키위 등 과일의 특징이 잘 나타나는 단면 부분을 토끼의 귀와 몸통쪽에 표현하여 창작한 저작권으로,

○ 자신들이 보유한 「후르츠 래빗」 저작권을 침해한 '과일토끼 젤펜'을 중국에서 수입·판매한 국내 사업자 A와 B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하여 개시된 건임

* [붙임] 후르츠 래빗 저작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요 참조

□ 무역위원회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약 6개월에 걸쳐 서면 질의, 외부 전문가 감정 등을 통해 저작권 침해여부를 면밀히 조사하였고,

○ 그 결과, **피신청인인 국내 사업자 A가 수입하고, B가 국내에 판매한 '과일토끼 젤펜'은 신청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제품이며, 이들의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**한다고 판정하였음

□ 무역위원회가 「후르츠 래빗 저작권 침해」 조사 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함에 따라,

○ 피신청인인 국내 사업자 A와 B에게는 불공정무역행위 **조사대상물품의 수입·판매 행위 중지,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고 과징금을 부과**하였음

□ 한편, 무역위원회는 "국내 기업들이 자사의 특허·상표·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의 수출·입 행위 발생시 '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'를 통해 신청서 접수 후 6개월 이내에 구제받을 수 있다며, 앞으로 더욱 많은 기업들이 무역위원회의 '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'를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"고 밝혔음

*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하는 중소기업의 경우, 변호사, 변리사 등 대리인 선임비용의 50% 범위 안에서 5,000만원까지 지원 가능(문의 : 중소기업중앙회 통상정책실(02-2124-3165))

【붙임】 후르츠 래빗 저작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조사 개요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나한균 사무관(☎044-203-588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**후르츠 래빗 저작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요**

□ 조사 개요

○ **(신청인)** 조윤희(씨알존 대표), 김재신(씨알존 이사, 저작권자)

○ **(피신청인)** 국내 사업자 A, 국내 기업 B

○ **(조사대상 물품)** 과일토끼 젤펜

신청인 저작권	조사대상물품
후르츠 래빗 캐릭터 (창작 : '10.11.24)	과일토끼 젤펜
	

□ 조사 경과

○ 조사신청서 접수('19.6.7.), 조사개시결정('19.6.19.)

○ 서면조사('19.6월~10월), 전문가 감정('19.10월)

□ 조사 결과

○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물품인 과일토끼 젤펜을 중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한 바, 피신청인의 행위는 불공정무역행위*에 해당하며,

* 「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」 제4조(불공정무역행위의 금지) 규정에 따라 저작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입·판매하는 행위(제1항 제1호)

- 이는 법 제10조 및 제11조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(시정조치 명령, 과징금 부과) 대상임